

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옥 co-work 운영규칙

제1조(운영목적) 지역 ICT 기업의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소통 및 협업 공간을 제공하여 공유가치 창출 및 협업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한다.

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다.

- ① 운영주관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 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② 목조와즙이란 건물구조에서 목조 구조의 기와지붕을 말한다.
- ③ 평가건이란 단층(1층)을 지칭한다.
- ④ 시설물이란 제4조(재산의 표시)의 건물을 말하며, 이에 위치한 동산(의자, 책상 등)일체를 포괄한다.
- ⑤ 신청인란 한옥 co-work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자를 말한다.
- ⑥ 사용자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득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위치)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65-8(전주시 완산구 교동 63-11)

제4조(재산의 표시)

대지	건평	건물구조	비고
314㎡	76.59㎡	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	(부속건물)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4.4㎡

제5조(사업내용) 본 규정의 시설물은 다음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- ① 지역 ICT 기업 협업 공간 및 회의, 워크숍 진행
- ② 기업 자율 네트워크 공간 및 교류 행사
- ③ 기업 간 기술 협업 및 공동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
- ④ 기타 지역 ICT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 운영주관이 인정하는 활동

제6조(이용료 및 사용기간) ① 시범 운영기간(6개월)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

시범기간 종료 후에는 1일당 이용료로 ‘진흥원’ 입주기업은 일만원, 외부기업은 이만원을 징수한다.

-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전기료 등 공과금 등의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 차원의 부과이며 차후 운영비 등을 감안·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사용기간은 평일(09:00~18:00)범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휴일, 장기간 사용 시에는 사전 ‘진흥원’ 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제7조(사용신청 및 허가) 신청인은 다음 절차에 의해 신청 및 허가를 득해야 한다.

- ① 신청방법은 ‘진흥원’ 홈페이지와 사무실에 준비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한다.
- ② 사용 당일 신청은 불가하며, 최소 2일전 신청서 접수 후 허가를 득해야 한다.
- ③ 신청처리는 접수순으로 하며, 허가는 사용일 1일전까지 유선·기타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- ④ 신청 취소는 사용일 1일전 까지 유선·기타방법으로 해야 한다. 그렇지 못한 경우 차후 신청 및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다.
- ⑤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.
 - 1. 한옥 co-work 사용 신청서(별지 1호) 1부.
 - 2. 한옥 co-work 이용 준수 서약서(별지 2호) 1부.
 - 3. 신청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사업자등록증, 국가기관 발급 인정서 등) 사본 1부.
- 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 - 1. 특수 목적 및 장기 사용 신청 시 사업계획서 또는 프로젝트기획서 등
 - 2. 기타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

제8조(준수사항) 사용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준수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제를 받을 수 있다.

- ① 입·퇴실 시 ‘진흥원’ 담당자와 함께 시설물 손·망 여부를 확인한다.
- ② 제1항 확인 시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발생된 손·망된 부분에 대해서는

고의,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.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
③ 시설물 내부로 인화·폭발성 물질 등 허가 받지 아니한 물질을 반입할 수 없다.

④ 사용 후 정리 정돈 및 쓰레기 처리 등 청결한 상태로 해야 하며 시설물 등은 원상복구 한다.

제9조(사용자의 금지사항)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

- ①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,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만한 간판,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
- ② 진흥원이 공급하는 이외의 목탄, 석유, 유류, 가스등 일체의 연료를 사용하여 채열하는 행위
- ③ 임의로 냉, 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- ④ 진흥원이 설치한 구조물,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, 오손하는 행위
- ⑤ 음주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
- ⑥ 쓰레기 투기 및 방치 행위
- ⑦ 기타, 진흥원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

제10조(준용)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설 및 물품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.

부칙

1. 본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